

중국 여성근로자의 산업보건 실태에 관한 고찰

북경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 옹* · 고민정 · 임민경

— Abstract —

A Review on the Occupational Health Status of Female Workers in China

Yong Wen*, Min-Jung Ko, Min-Kyung Lim

BeiJing Medecale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status of female workers in China, where the half of female population are workers in occupational settings and realizes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health among them, to establish the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in Korea as Korean female workers have been increasing for the last few decad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otal workers have increased from 7.5% in 1949 up to 37.6% in 1990. As for the distribution of female workers by industry, manufacturing part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otal and out of total female workers, the rank was health • social welfare (53.2%), community • personal service(45.4%) and agriculture • forestry • fishing(44.1%).
2. The system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for female workers was related to superior organization well by administrative district & work place and professionals were distributed to one per ten thousand persons or more, depending on each region's conditions.
3. The regulations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for female workers are defined in a variety of fields. Considering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 the loss due to menstruation, pregnancy, delivery and lactation and has let them have vacations, guaranteeing the health facilities at the same time. Also government has defined the scope of prohibited work to protect legal right of them.

I. 서 론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인한 인적자원의 부족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산업장내 여성근로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1991년 우리 나라 전국 취업인구 중 여성인구는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각각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1994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살펴보면 미혼여성은 50.5%, 기혼여성은 47.1%로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규상, 1991; 박정순, 1994; 박정은, 1996)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신체적 특징이나 임신, 분만, 수유 등의 모성활동과 월경 등의 생리학적인 변화로 노동으로 인한 위대한 요인들에 노출시 건강상의 문제가 성인 남성보다 훨씬 많고 심각하므로 보건학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법규, 정책적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근로자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수반되는 보건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대책과 지도가 요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1억정도의 여성근로자를 보유하고, 법적근거하에 체계적으로 이들에게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중국의 보건실태를 살펴봄으로 향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위생부, 1991).

II. 중국 여성 근로자의 산업보건 개요

1. 중요성

중국은 남녀 평등 실시에 의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들만 종사하던 분야에도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진석, 1990). 특히 직업성 유해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성에 비한 여성의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남녀 隔差가 있고, 직업성 유해 요인은 여성근로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불임, 자연유산, 선천성기형아, 조산 등 생식기능 및 임신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점차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의 독성 물질 접촉으로 모유수유를 통해 유아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나아가서는 민족 자질 퇴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몇 차례 전국 여성산업 보건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북경의과대학 내에는 중국 전국 여성근로자 연구팀이 개설되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북경의과대학, 1992).

2. 목적(School of Public Health, B. M. U, 1990-1991)

- 1) 작업조건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 및 예방책을 마련한다.
- 2) 직업성 유해요인이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한다.
- 3) 여성의 생식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효율적인 노동을 보장하며 후세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III. 여성근로자의 산업보건 실태

1. 여성근로자 현황(保衛書 등, 1991)

1) 인구수 증가율

1949년부터 여성근로자의 인구수는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1949년 60여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 중 7.5%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이미 5260여만 명(농촌지방기업체와 도시개인기업체의 여성근로자는 미포함)에 달하여 전체 근로자 수의 37.6%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여성근로자는 매해 약 100여만 명(표 1 참조)씩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 농촌지방기업체에도 많은 수의 여성근로자가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농촌지방기업체 약 10581만명 중 여성근로자는 52%를 차지한다고 한다(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1995).

2) 여성 근로자의 직업별 분포

1989년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국 여성근로자의 직업별 분포(농촌기업체와 도시개인기업체는 미포함)를 살펴보면 총근로자중 위생, 체육, 사회복지 분야의 여성근로자가 53%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공공사업 및 시민봉사분야로서 이 분야의 근로자 총 수의 45.4%를 차지하였으며, 농업, 산림, 목축업, 어업,水利 분야와 상업, 음식업 및 공급업체 총종사자중

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44.1%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근로자 총 수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로 볼 때 산업분야가 1위로써, 여성근로자 총 수의 50%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표 2 참조)(중국위생년감 편집위원회, 1993).

2. 산업보건 관리체계 (Fig. 1. 참조)

중국에는 현재 城, 市급의 방역참과 같은 수준의 모자보건원이 346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근로자 전용 보건과가 있으며, 이는 대기업 직원병원의 모자보건과와 연계되어 있다. 縣, 區급의 모자보건소(참)는 2841개가 있는데 이들 각각은 공장 광산 위생소의 여성보건실과 연계되어 있으며, 여성근로

자의 보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팽서총 등, 1988). 모자보건기구의 인원구성은 1986년의 위생부, 노동인사부에서 발표한 <<각 급 모자보건기구 인원구성 표준(試行)>>의 규정에 따라서 縣 이상(縣 포함)의 모자보건기구의 총 인원구성은 보통 인구의 1:10000 으로 배정하였으며, 땅이 넓고 인구가 적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 및 대도시에는 인구의 1:5000 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15000 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모자보건원의 위생기술인원은 총 인원의 75-80%를 차지하게 하였으며, 모자보건원의 기술인원은 총 인원의 80-85%를 차지하도록 되어있다(양건바 등, 1990).

Table 1. Trend of Numbers and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otal Workers

Year	No. of female workers (In ten thousand persons)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otal workers(%)
1949	60	7.5
1984	4324	36.5
1985	4596	37.3
1986	4688	36.0
1987	4859	36.4
1988	5036	37.0
1989	5137	37.4
1990	5260	37.6

Table 2. Distribution of Female Workers by Industry in 1989

Industry	No. of female workers (In ten thousand persons)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otal workers(%)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otal female workers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370.2	44.1	7.2
Manufacturing	2570.0	41.3	50.0
Mining	24.4	23.4	0.1
Construction	198.6	21.2	3.9
Transport & Communication	187.1	23.9	3.6
Wholesale, retail trade & restaurants	777.3	44.0	15.1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171.4	45.4	3.3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203.2	53.2	4.0
Education, culture and entertainment service	406.3	36.4	7.9
Science and technology reserch	51.0	34.7	0.1
Finance & Insurance	65.5	35.5	1.3
Government employee and social organization	178.9	20.2	3.5
Total	5137.1	3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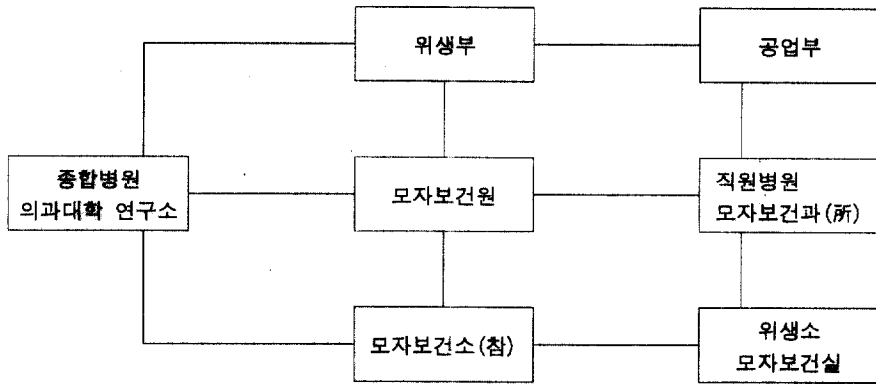


Fig. 1. 중국 여성근로자 산업보건 관리체계

3. 관련 법규(진명관 등, 1991)

1) 남녀평등원칙에 관한 헌법의 명확한 규정

2) 헌법 제 48, 49조

: '국가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직업과 보수에 있어서 남녀 다 같다', '모친과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

: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산업보험조례, 1953년 산업보험조례실시 세칙수정조안 및 1955년에 국무원에서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모두 56 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며, 난산, 다태아 출산시에는 14일을 추가하며, 임신 7개월 미만에 출산하였을 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이하의 휴가를 주며, 출산휴가 기간의 월급은 휴가 전 그대로 지급된다'고 규정하였다(이주 등, 1993).

4) 위생시설에 관한 규정

〈공장안전위생규정 (1956. 5)〉

제 68조, 72조 : 공장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여성 전용 위생실을 설치하고, 여성 위생실은 작업장에 가까운 근처에 설치해야 하며, 室内에는 温水박스, 샤워시설, 욕조, 오물상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업기업설계위생표준 (1956.3)〉(국무원, 1956)

제144-147조 : 여성위생실 설치에 관한 細則들을 규정하였다.

제148-153조 : 모유수유실, 임신부 휴게실, 탁아소 등에 대한 규정, 이 위생표준은 1979년에 개정을 통하여, 수정된 《공업기업설계위생표준》(TJ36-

79)의 제4장 제4절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위생시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위생부, 1979).

5) 경험과 과학적 연구결증을 바탕으로 제정된 체계적인 법규(범치영, 1990)

① 〈여성근로자산업보호규정 (1988. 7)〉

국무원 제 9호령 : 여성근로자의 월경기간, 임신기간, 출산, 수유기간 등 '4期間' 동안의 산업보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여성근로자들의 상기 '4期間' 동안의 일부 금지 작업에 대한 필수 원칙을 제시하고있다.

② 〈여성근로자들의 금지 작업 범위에 관한 규정 (1990)〉

4. 산업보건 업무의 특징

1) 여성의 산업 활동 권리보호와 산업 활동에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강보이, 1990).

① 〈여성근로자 산업보호규정〉에 산업활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3조 :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기업체는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 4조 :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 출산, 수유기간의 임금의 기본금을 공제해서는 안되며, 혹은 고용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② 〈여성근로자 산업보호 규정〉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로 취급하여 여성의 특유한 생리적 특성, 二世양육과 종족유지의 임무를 고려하여 산업보건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1조 : '본 규정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여성근로자의 산업 활동에 있어서 여성 특유의 생리적 특징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減少 및 해결책을 마련하며, 건강을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유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명확히 규명하였다.

2) 여성근로자 산업보건의 중심 내용은 여성의 모성기능, 즉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생식기능에 대한 보호이다.

① 정부가 <산업위생국가표준집> <직업병진단관리방법> <공장안전위생규정> 등 전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

기능을 보호해주고 있다(위량제 등, 1994).

② 여성근로자의 '4期 보호' (월경, 임신, 출산전후, 수유기간의 보호)(왕이란 등, 1993)

: 월경 기간 중에는 高空 작업, 低溫 냉수 접촉 작업 및 과중한 노동은 일시 중단하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임신 과정, 結果 및 태아 발육에 不良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당분간 중단한다. 예를 들면, 과중한 노동, 작업장 공기 중의 일부 유독성 화학물의 濃度가 국가 위생 표준치를 초과하거나, 製藥 업체에서 항암제 생산, DES(diethylstilbestrol) 생산 작업, 전신 진동을 동반하는 작업 및 高空 작업 등이 있다(표 3 참조). 임신 7개월 이상의

Table 3. Scope of Work Prohibited for Female Workers

Population	Related Regulation	Contents of Work Prohibited
Total female workers	<Regulation on the scope of work prohibited for female workers> Article I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nderground mining work 2. Forestry : Cutting, Classifying and transporting woods 3. Physical labour of the fourth level of strength 4. Setting up and removal of scaffolding plank in construction 5. Continuous burdening, over 20kg/each time (over 6 times/hr); temporary burdening, over 25kg/each time
Female workers in the period of menstruation	<Regulation on the scope of work prohibited for female workers> Article 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ntacting low temperature materials (e.g. refrigerator, cold water) 2. Physical labour of the fourth level of strength 3. Exceeding the second level of high altitude
Female workers in the period of menstruation	<Regulation on the scope of work prohibited for female workers> Article V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xceeding the national sanitary standard on the density of toxic materials in the air of work place(e.g.lead, hydrargyrum, benzene, beryllium, zinc, fluoride, nitrogenoride, CO, CS₂, chloride, caprolactam, butylene, chloroethylene, oxirane, aniline, formaldehyde etc) 2. Producing work of anti-cancer medicine and DES(diethylstilbestrol) in pharmacy 3. Work dealing with radiation material which exceeds the limitation of radiation protecting regulation 4. Delivering stones and soil by human power 5. Physical labour of the fourth level of strength 6. Work with frequent oscillation 7. Work with frequent bending the waist and with sitting down 8. Work in the high altitude
Female workers in the period of lactation	<Regulation on the scope of work prohibited for female workers> Article V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rticle 6. clause 1, 5 2. Exceeding the national sanitary standard on the density of toxic materials in the air of work place (e.g. manganese, chlorine, bromide, methylalcohol, organic phosphide, ammonia)

여성근로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며 동시에 적당히 業務量을 줄이며, 병원이나 여성보건소에 임신검진을 가는 시간은 정상 출근으로 처리한다. 여성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有報酬 출산 휴가 90일이 있는데, 그 중에는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15일간의 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1세 미만의 兒童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두 차례의 수유 시간이 있는데 매회 30분간이다. 授乳期の 여성근로자는 야근을 하지 않으며,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는다.

3) 공업 분야의 여성근로자가 당면한 문제점

중국에는 여성근로자의 50%가 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작업 현장에서 남성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음, 진동, 전자파 등 물리적 요소 및 유독성 화학물 등 각종 유해물을 접촉하게 된다. 이에 공업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은 곧 여성근로자 산업보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위의 《여성근로자들의 급기 작업 범위에 관한 규정》을 制定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그 날부터 여성의 생리적인 특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당한 작업을 배정함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월경, 임신, 수유기에는 여성의 母性機能에 不良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明示하였다(표 3 참조)(정용 등, 1994, 위생부, 1993).

☞ Table 5. 위치

5. 여성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방법

1) 여성근로자 산업보건과 여성 보건에 관한 업무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근로자 산업보호와 여성 보건 문제를 결부시키고, 또 여성 보건 관리 인원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 산업보호와 여성 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며 여성의 산업보호에 참여시킴으로 여성의 산업보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경균 등, 1993).

2) 각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여성근로자의 산업보건업무를 추진한다.

: 산업기관, 위생기관, 노동조합 및 여성연합회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최대 공업도시인 상해에서는 이미 市 勞動局, 市 衛生局, 市 勞動組合의 女性勤勞者部와 관련 전문가, 과학기술인원들

로 구성된 女性勤勞者産業保護委員會를 건립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업보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대공업 기업에서는 직원 전용 병원 혹은 위생소의 산부인과 의사와 노동조합의 여성담당 위원, 산업관리기관의 산업보건 담당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는 여성근로자 산업보건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보증이 된다.

3) 대학과 과학연구 기관의 여성산업보건과 산업보호에 관한 연구에 동참한다.

: 대학의 산업보건학교실 및 산업보건과 산업보호 연구 기구 종합병원 직업병과 등 내에는 모두 여성 산업보건과 산업보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근로자의 산업보건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呂寶成 등, 1993).

IV. 맺음 말

중국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초기부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제 정비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비교적 완전한 여성 산업 보호법규가 있으며, 각종 정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현재, 國營大, 中型 기업에서는 정부의 규정대로 비교적 잘 실행이 되고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업보건을 하고 있다(위생부, 1993).

그러나 일부 규모가 작은 私營 기업체, 특히 鄉鎮 기업체, 경제 효율이 낮은 기업체 및 여성근로자가 비교적 집중된 기업체에서는 법규 실행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인민대표대회, 1988). 이외에, 여성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체들은 여성 산업보호 관련 법규를 여성에 대한 특수 복지로 간주하고 여성근로자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또한 중국사회의 각종 특이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산업보건의 不均等한 발전을 야기시키는 단점과, 중국의 넓은 땅과 많은 인구로 인해 법규의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함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 산업보건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실시에 힘입어서 관련 기관에서는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광범위하게 홍보 교육을 통하여 여성이 산업 활

동에 참여하는 의의와 여성 산업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그와 더불어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기업체간의 여성근로자 산업보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여성이 취업하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生育費用에 대한 사회적인 통일된 계획, 즉 生育基金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보다 심도 깊은 여성 산업보건 실시에 따라 상기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중국의 여성 산업보건 수준은 날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REFERENCES

- 1) 保毓書 등: 중국의 부녀 노동보호, 중국안전과학학보, 1991;(4):6-10.
- 2) 양건바 등: 사회의학, 인민위생출판사, 1990.
- 3) 진석: 중국, 신성출판사, 1993.
- 4) 呂寶成 등: 중국병원 예방보건실용기술대전, 학원출판사, 1993.
- 5) 이주 등: 출생결함감측 제2판, 인민위생출판사, 1993.
- 6) 북경의과대학: 婦幼위생개론, 1992.
- 7) School of Public Health, B. M. U.: Annual Report, 1990-1991.
- 8) 保毓書 등: CS2작업 여공 노동보호조치에 대한 연구, 공업위생과 직업병 1991;7(5):303-305.
- 9) 팽서충 등: 중국위생사업관리학, 길림과학기술출판사, 1988.
- 10) 중국위생년감 편집위원회: 중국위생년감, 인민위생출판사, 1993.
- 11) 1995년 통계개요: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 12) 진명관 등: 위생법학, 상해의과대학출판사, 1991.
- 13) 정용 등: 직업병 증독 물리손상진료 수첩, 상해의과대학출판사, 1994.
- 14) 전국 위생통계연보자료: 위생부, 1993.
- 15) 왕이관 등: 노동위생학, 인민위생출판사, 1993.
- 16) 중국위생통계개요: 위생부, 1993.
- 17) 위량계 등: 중국기업노동위생 관리현황, 광서의학, 1994; 16(6):532-535.
- 18) 범치영 등: 노동위생 관리중의 조직영도 및 입법, 중화노동위생 직업병잡지 1990;8(2):98-100.
- 19) 공장안전위생규정: 국무원, 1956.
- 20)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인민대표대회, 1988.
- 21) 위생방역공작규범(노동위생분책): 위생부, 1991.
- 22) 백남원: 산업위생학개론, 신광출판사, 1995.
- 23) 전경균 등: 직업유행병학, 인민위생출판사, 1993.
- 24) 강보이: 실용 공업위생공작수첩, 인민위생출판사, 1990.
- 25) 공업설계위생표준(TJ 36-79): 위생부, 1979.
- 26) 조규상: 산업보건학, 수문사, 1991.
- 27) 박정순: 여성의 중사산업과 자연유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8) 박정은: 취업여성고 건강문제, 한국모자보건학회창립총회 및 기념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96;6:89-112